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신동근・이정문・전재수

박광온 • 고용진 • 남인순

변재일 • 윤관석 • 윤호중

양향자 · 강선우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대상 기관·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 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하여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방법과 내용"을 "방법·내용 및 결과 공표"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 |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
| 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 | |
| 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 |
| 3년마다 <u>하여야</u> 한다. | 실시하고 그 결과를 |
| | <u>공표하여야</u> . |
| <u><신 설></u>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
| |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
| | <u>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관계</u> |
| | <u>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u> |
| | 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
| |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
| | 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
| |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 |
| | <u>야 한다.</u> |
| ②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 | <u>③</u> |
| 사의 <u>방법과 내용</u> 등에 필요한 | <u>방법·내용 및 결과 공표</u> - |
|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 |
| 다. | |